

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(안)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6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,335,440천원으로써, 이중 5건에 375,911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<u>계(5건)</u>	<u>375,911천원</u>
○ 대설피해 민간인재해보상금	39,450천원
○ 가뭄발생지역 관수장비 공급 지원	189,540천원
○ 제15호 태풍 “블라벤” 민간인재해보상금	46,250천원
○ 제15호 태풍 “블라벤” 피해 분청 창고동(서고) 보수	19,931천원
○ 제16호 태풍 “산바” 민간인재해보상금	80,740천원임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9조
-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